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와 감사위원회 역할

: 국제윤리기준을 중심으로

2024.5.9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공 전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국제윤리기준

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는 국제윤리감사재단(IFEA)산하의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제정 기구로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임

한국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에 속한 회계법인의 경우 국제윤리기준이 적용됨

PIE감사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PIE감사대상회사와 그 지배회사, 종속회사에게 비감사업무 제공 전,

“PIE감사대상회사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동의)을 구해야” 함

PIE(Public Interest Entity)란?

▶ 주식/채권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회사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공 전 감사위원회의 점검 국제윤리기준과 공인회계사법 비교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이 속한 글로벌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감사업무는 국제윤리기준 준수 요구

구분	국제윤리기준	공인회계사법												
협약 및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은 PIE감사대상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동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은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의 감사위원회와 사전에 “협약” 필요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비감사용역은 사전에 감사위원회 “동의” 필요 												
금지되는 비감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하는 비감사업무 (중요성 없음) 	<table border="1"> <tr> <td>재무제표 작성</td> <td>내부감사 대행</td> <td>경영진 책임 수행</td> </tr> <tr> <td>인사(HR), 조직 지원</td> <td>소송 지원</td> <td>실사, 가치 평가</td> </tr> <tr> <td>재무정보 체제 구축 및 운영</td> <td>보험 계리 업무</td> <td>자금조달 투자 알선 및 중개</td> </tr> <tr> <td colspan="3">기타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td> </tr> </table>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 대행	경영진 책임 수행	인사(HR), 조직 지원	소송 지원	실사, 가치 평가	재무정보 체제 구축 및 운영	보험 계리 업무	자금조달 투자 알선 및 중개	기타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 대행	경영진 책임 수행												
인사(HR), 조직 지원	소송 지원	실사, 가치 평가												
재무정보 체제 구축 및 운영	보험 계리 업무	자금조달 투자 알선 및 중개												
기타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PIE에 해당하는 감사대상회사자체, 지배회사, 종속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감사대상회사, 연결종속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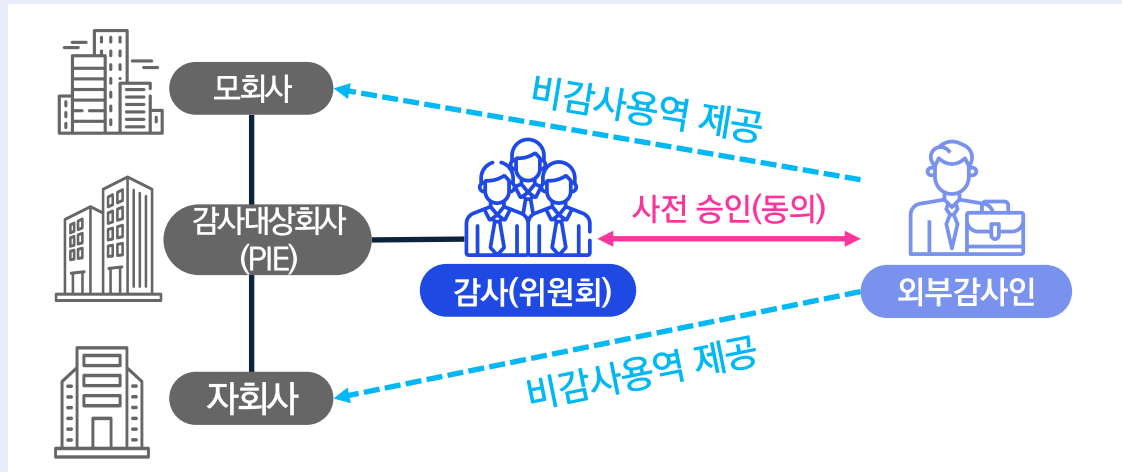
PIE 해당 회사 감사위원회의

비감사업무 제공 전 고려사항

감사위원회는 국제윤리기준과 공인회계사법의 차이를 숙지 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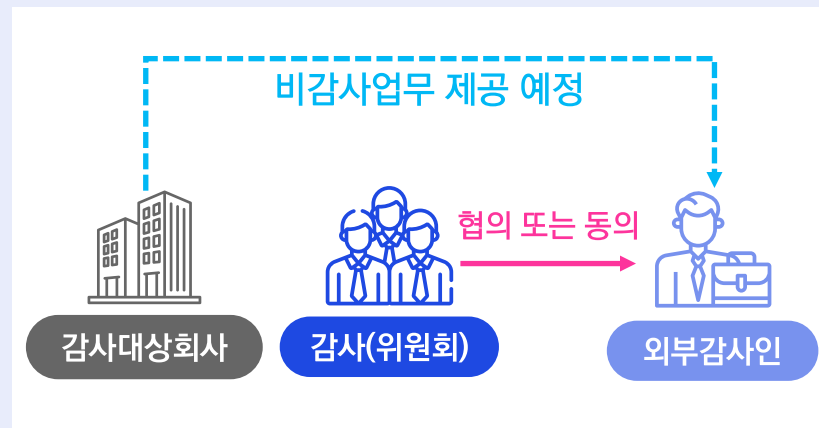
국제윤리기준

PIE감사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이
PIE감사대상회사 자체, 지배회사,
종속회사에게 비감사용역 제공 전,
PIE감사대상회사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동의) 필요



공인회계사법

감사대상회사에 비감사업무를 제공 전,
감사대상회사 감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



감사대상회사의 자회사에 비감사업무를 제공 전,
자회사 감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





비감사업무 제공 전 감사위원회의 점검사항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비감사업무는 어떻게 동의할 것인가?

- 독립성 위협이 없는 업무에 한정하여 **목록화 하여 일괄 동의 권고**
→ PIE감사대상회사는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정책을 수립하여 사전 동의 된 업무를 목록화 하는 것이 효과적
 - 제공가능한 업무 목록과 사전 승인에 대해 감사인과 논의
- 목록에 없는 경우는 **건별 동의**

비감사업무 제공 전 감사위원회가 검토할 내용

비감사업무 성격과 범위	 감사업무와 관계없는 인원이나 리뷰어 배치
독립성 위협여부	
안전장치여부	
비감사업무 예상 보수	
감사/비감사 업무의 보수 비율	
	 감사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는 비감사업무 수행 금지

제10회

ACI SEMINAR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연구

- 일시: 2024년 7월 4일(목) PM 2:00 ~ 5:50 (이후 석찬 제공)
- 장소: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1F 그랜드 볼룸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322)
- 참가 문의: 02-2112-6588 | kr-fmsamjongkpmgaci@kr.kpmg.com



제10회 ACI SEMINAR

세미나를 마치고 석찬을 통해 교류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에 정중히 초대드리오니 감사(위원)님, 사외이사님들의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교육 참가신청

좌측의 QR코드 스캔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